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09가합222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

판결선고 2014. 10. 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산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 소외인이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자서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주 심 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김 신